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33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 송재봉·서왕진·이용선

김남근 • 전진숙 • 이용우

박정현 • 이광희 • 차규근

박홍근 • 박주민 • 김우영

이수진 • 차지호 • 이연희

남인순・김 윤・이강일

천준호 · 김동아 · 허성무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회계처리를 할 때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자체 수입·지출과 명백히 구분하도록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회계 인력을 두기 어려워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특 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지출해야 하 므로 저렴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노력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외부감사 제 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은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제18조의3(회계 관리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2 4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8조의2(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
	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비용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
	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u>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8조의3(회계 관리 교육) 행정
	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사업자
	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계
	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
	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